

< 별첨 >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선 방안

2016.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목 차

I. 현 황	1
가. 추진 배경	1
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현황	2
II. 현행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	4
가. 외국인 투자자	4
나. 외국인 투자를 대행하는 국내 금융회사	5
III. 개선 방안	6
IV. 기대 효과	10
V. 향후 추진 계획	12

I. 현황

가. 추진 배경

□ 국내외 투자환경과 거래관행 등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도 개선할 필요

① 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 지수를 추종하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패시브 펀드)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

* 패시브 펀드는 다수 국가에서 빈번히 매매해야 하므로, 거래비용 등에 민감

② 글로벌 증권사들이 다수 고객의 주문을 통합 처리하는 “옵니버스 계좌(omnibus account)” 영업형태도 증가

③ 반면, 일부 공공적 법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도 폐지되어, 과거와 같이 외국인 투자등록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낮은 상황

□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글로벌 거래 관행에 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개편

① (원칙1)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대한 불편없이 글로벌 투자관행대로 손쉽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원칙2) 국내 조세제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와의 정합성 확보

③ (원칙3)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인 외환·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①MSCI 홍콩 방문('15.12), ②현장점검반 의견청취('15.12), ②역내외 투자불편 해소방안 T/F(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16.1) 등

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현황

(1) 개요

-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
 - * '15년말 현재 4.2만개 외국인 ID가 등록되었고, 이중 집합투자기구(글로벌 자산운용사 등)가 등록한 ID가 1.9만개로 46.0%를 차지
-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등록을 하고, 이를 제시하여 증권사·보관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야 함
 - * 외국인 투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 단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 개별펀드 단위)로 등록함
- 동 투자등록 제도는 외국인 주식 투자동향 모니터링 및 일부 공공적 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 점검을 위해 운영
 - * 한국전력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 33개사의 주식에 대하여 외국인 취득한도를 설정 중

< 외국인투자자 등록 현황 >

(단위: 명)

구 분	'13년말	'14년말	'15년			
			7월말	9월말	12월말	(비중)
개 인	9,904	10,159	10,302	10,354	10,411	25.1%
기 관	27,707	29,518	30,486	30,713	31,161	74.9%
(집합투자기구)	16,764	17,956	18,667	18,827	19,148	46.0%
(연 기 금)	2,054	2,103	2,125	2,131	2,141	5.1%
(투자매매·중개업자)	840	885	909	920	932	2.2%
(은 행)	677	690	699	702	705	1.7%
(보험회사)	443	463	475	478	482	1.2%
(기 타)	6,929	7,421	7,611	7,655	7,753	18.6%
합 계	37,611	39,677	40,788	41,067	41,6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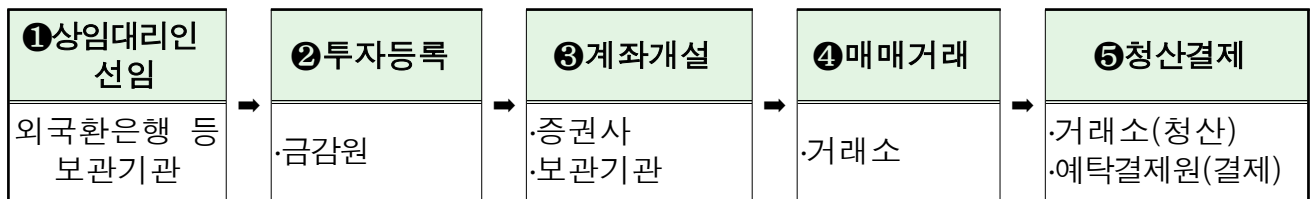
(2) 외국인 투자자 증권거래 절차

- 외국인의 국내증시 참가는 상임대리인*(보관기관 등) 선임 → 투자등록 → 계좌개설 → 매매거래 → 결제의 순으로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자의 매매거래 결제 및 주주권행사(의결권, 배당금수령 등)등을 대리

- 투자등록 단위별로 증권사 및 보관기관에 개설한 증권계좌와 원화·외화계좌를 통해 상장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참가절차 >



- 국내 증권회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체결 및 거래내역 신고(금감원),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은 보유증권 등의 보관 및 결제업무를 수행
 - 국내 증권회사는 각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거래소에서 실행하고, 체결결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달
 - 국내 보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체결결과에 따라 결제를 지시하면, 증권회사의 매매자료와 대조 후 결제를 실행
- 글로벌 운용사 거래편의 등을 위해 다수 외국인(개별펀드)의 매매주문을 통합 처리하는 명목계좌(SNA : special nominee account) 제도가 있으며,
 - 동 계좌에서는 매매주문·체결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나, 결제 이전 각 외국인(개별펀드) 계좌별로 매매체결 내역을 배분하여야 하고, 배분된 계좌별로 각각 결제를 처리하여야 함

II. 현행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관련 불편사항

가. 외국인 투자자

- ① (글로벌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사실상 단일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별로 매매거래 및 결제를 수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번잡
- * 투자등록 자체는 일회성이며 통상 상임대리인이 대행하므로 큰 불편이 없으나, 등록단위(계산주체)인 펀드별로 매매·결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비효율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주문”을 허용하는 명목계좌(SNA)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개별펀드별로 결제를 하여야 하는 불편은 상존
 - * 일괄주문 체결후 다음날(t+1)까지 체결된 주식을 개별펀드별로 배분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에 펀드별로 각각 결제를 지시하여야 함

☞ “(글로벌 자산운용사 A사) 운용중인 100여개에 달하는 펀드별로 각각 거래·결제해야 하며, 명목계좌를 이용해도 펀드별 거래내역을 분할하여 매매 다음날 통지해야 하는 등 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② (해외 개인 및 중소 기관 투자자) 익숙한 글로벌 증권사의 단일 계좌를 통하여 다양한 국가의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증권거래를 하고 싶으나,
-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증권사 계좌와 별개로 투자자별 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주문과 결제도 글로벌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불편
 - * 투자등록한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1만명(전체 등록 외국인의 25%)에 달하나 투자불편 등으로 실제 보유잔액은 극히 미미('15말 1.4조원(전체 외국인의 0.16%))
 - ※ 한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의 주식시장에 참가할 때에는 글로벌 증권사의 “옵니버스계좌”를 통해 통합 거래 가능

☞ “(미국계 중소형 연기금 B사) 현재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유럽, 일본 등 증시에 참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문·거래도 따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익숙한 글로벌 증권사를 이용하여 한국 증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 외국인 투자를 대행하는 국내 금융회사

- ① (국내 증권사)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개별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원칙적으로 펀드별로 매매주문을 처리해야하는 부담
- 명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① 운용사의 “펀드별” 분할지시서 수령하고 ② “펀드별” 매매보고서를 작성·통지한 뒤 ③ 결제 이전 (t+1일)에 펀드별 배분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부담
 - * 결제 전일 배분내역을 사전 보고한 후에는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수정이 곤란하여 오류가 있는 내용대로 결제하고 사후 매매를 통해 시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現 “(국내 증권사 C사) 수백개에 달하는 펀드별로 각각 계좌를 개설·관리하고 사전적으로 배분내역을 신고하며, 결제업무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거래 후 프로세스에 커다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② (보관기관)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대해 개별 펀드별로 결제를 각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행정비용 발생
- 운용사로부터 “펀드별” 결제지시서를 수령(t+1일)한 뒤 증권사가 보내 온 “펀드별” 매매보고서와 일일이 대조한 뒤에 결제(t+2일)
 - 통합주문이 가능한 명목계좌(SNA)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결제 이전에 “펀드별” 결제지시서를, 증권사의 “펀드별” 매매보고서와 일일이 대조하여 결제하여야 함
 - 특히 외국인의 결제지시서는 아직도 일부가 Fax 및 E-mail등으로 송달되어 담당자의 펀드별 수작업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

現 “(상임대리인 D사) 펀드별로 고객 계좌를 개설·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 펀드별 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한 뒤 결제처리 하는 업무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Ⅲ. 개선 방안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더라도 명목계좌 등 기존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거래특성 등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

- ◇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
- ◇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투자한도 관리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는 유지하되, 투자절차상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 (개념)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 (통합계좌 개설)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금감원에 투자등록을 하고, 최종투자자의 주문·결제를 대행

○ (계좌명의자) 최종투자자의 매매내역 보고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외국정부 인가) 등에 허용

※ 세부 자격요건은 별도 마련

○ (최종투자자) 계좌명의자가 매매·결제를 대행할 최종투자자는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사전에 발급받은 외국인에 한정

* 내국인을 최종투자자로 포함시 외국인 한도, 모니터링, 과세문제 등 어려움

-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설 이후 최종투자자가 추가될 수는 있으나, 매매 주문 이전에 외국인 ID는 발급받아야 함

□ (통합매매) 계좌명의자는 최종투자자로부터 주식의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을 집행

□ (통합결제) 계좌명의자는 매매체결일 다음날(t+1)까지 결제일(t+2)에 결제할 증권에 대한 “단일” 결제지시서를 국내 보관기관에 송부

- 국내 보관기관은 계좌명의자로부터 받은 “단일” 결제지시서와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단일” 매매보고서를 대조 후 결제 승인

□ (사후보고) 증권회사 또는 보관기관은 계좌명의자로부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받아 결제가 이루어진 후(t+2) 즉시 금감원에 사후 보고

※ 구체적인 사후보고 시기·내용·절차 등은 별도 마련

- 금감원에 사후 보고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 투자한도 관리 등에 활용
- 신고 미비·허위 신고시에는 불이익 부여(예 : 통합계좌 이용 정지, 제재금 부과 등) 등을 통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

※ 참고 : 해외 옴니버스 계좌(omnibus account) 사례

□ 해외에서는 글로벌 투자회사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본인 고객(end client) 다수의 주문·결제를 해당 계좌에서 모두 처리하는 계좌를 “옴니버스 계좌(omnibus account)”라 함

- 다수 투자자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투자회사를 통해 손쉽게 거래 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 최종 투자자 파악이 어려우며, 투자회사가 본인 운용자산을 투자자 자산과 혼재하여 운용할 가능성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

□ 최근 해외에서는 옴니버스 계좌의 최종 투자자에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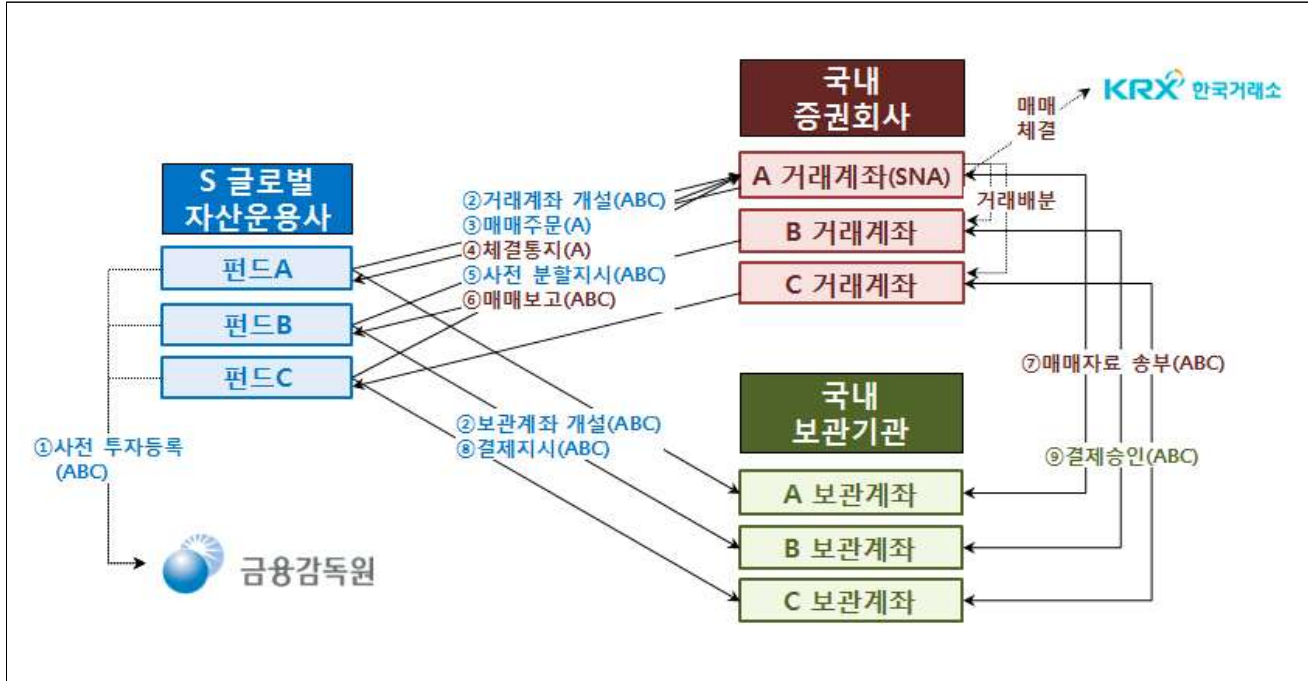
- 독일(BaFin)은 옴니버스계좌 개설시 보관은행이 금융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호주(AFS)도 옴니버스계좌에 대해 금융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 중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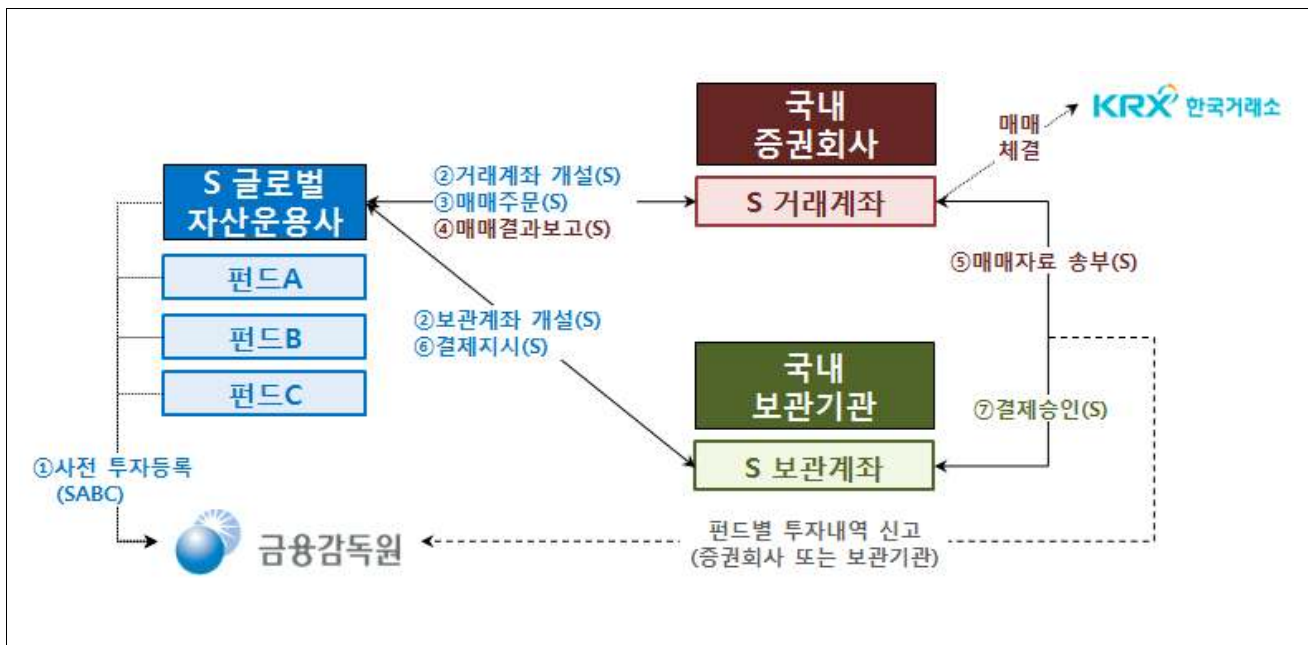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후 거래절차

1 글로벌 자산운용사

(현행) 개별펀드별 거래·보관계좌를 개설하고 각각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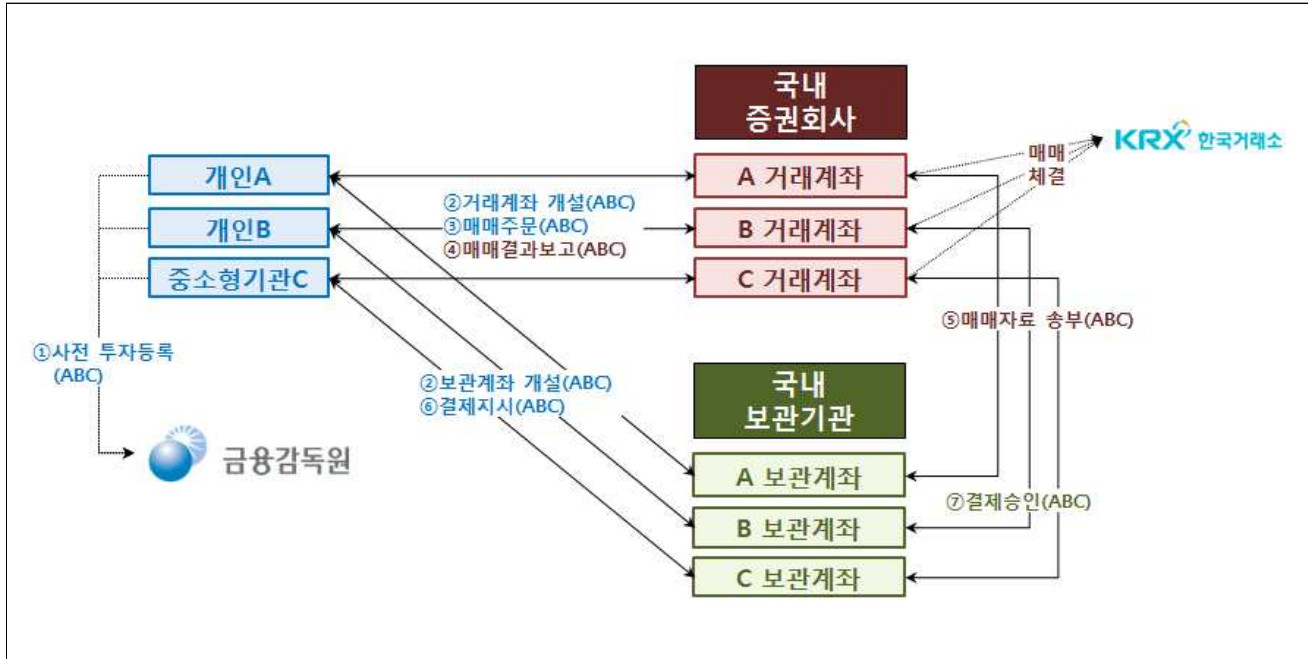


(변경) 운용사가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통합 주문·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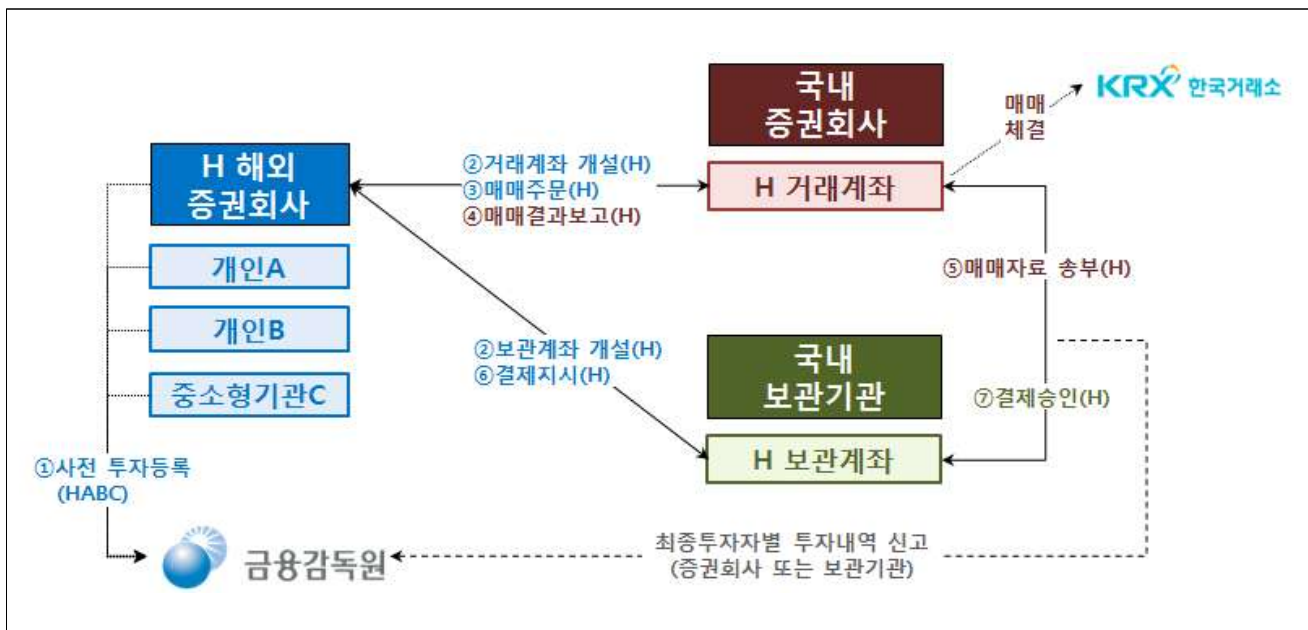


② 외국 개인투자자·중소형기관

(현행) 개별기관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각각 주문·결제



(변경) 기존에 거래하던 글로벌 투자회사(해외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omnibus account)를 이용하여 통합 주문·결제



IV. 기대 효과

- ◇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투자관행에 따라 손쉽게 우리 증시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투자기회를 얻고, 번거로운 결제지시 등 부담 경감
- ◇ 외국인 투자를 대행하는 국내 금융회사(보관기관, 증권사 등)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비용이 대폭 감소
- ◇ 사후보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금 모니터링 등 정책수단도 유지

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외국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 투자자들은 글로벌 증권사가 개설한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한국 증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음
 - 해외 중소기업 등은 한국에 손쉽게 투자하는 기회가 열리고, 글로벌 증권사는 고객에 한국 투자를 증개하는 새로운 영업기반 확보

“(상임대리인 D사) 옴니버스계좌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업무불편 해소는 물론 해외투자자 영업기반 신규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또한, 글로벌 운용사가 이용하는 명목계좌 제도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펀드별 결제지시 등의 번거로움이 사라짐
 - 글로벌 투자관행에 따라 손쉽게 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국가에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passive fund)등의 편익이 크게 증대

* 지수를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펀드로서, 지수 추종을 위해 다수 국가의 증시에 빈번히 투자하여야 하므로 결제 절차·처리비용 등에 민감

“(글로벌 자산운용사 A사) 결제가 옴니버스계좌 단위로만 이루어지므로 분할 내역 통지, 결제지시 등 후선업무가 대폭 경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증권사·보관기관의 업무 부담이 대폭 감소

- 결제가 옴니버스계좌 단위로 통합 수행되므로 펀드별 매매보고서 작성(증권사)과 펀드별 결제내역 확인(보관기관) 등 업무가 크게 간소화
 - * 현행 명목계좌(SNA)제도 하에서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매매일 다음날(t+1)까지의 최종투자자별 사전배분 의무도 이행 불필요
- 또한, 결제 이전에 최종 투자자 배분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하던 것이 결제 후 사후 보고로 바뀜으로써, 신고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업무 부담도 크게 경감
- 아울러, 펀드 각각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과 펀드 계좌 단위로 일일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 해소
 - * 국내 증권사는 비거주 외국인과 접촉하여 펀드별 날인을 받는 것이 어려움을 토로

“(국내 증권사 C사) 옴니버스계좌 도입으로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각종 문서작업, 확인작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외환·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모니터링 가능

- 사후보고를 통해 최종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동, 거래내용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등 기존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의 기능을 유지
 - 최종 투자자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최근 해외의 옴니버스 계좌 운영방향과도 합치
- * 예 : 독일·호주 등은 옴니버스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 자산과 고객(최종투자자) 자산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

V. 향후 추진 계획

- 관련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4월)
 -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 개편(~4월)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시범 운영('16.5월~)
 - ※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거래절차 등에서 미비사항 등을 검증하고, 미흡사항 발생시 즉시 시정하여 통합계좌 본격 출범시 혼란이 없도록 함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전면 시행('17년~)